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 고 : 제2013-787호
예고기간 : 2013. 10. 28 ~ 12. 09
담당부서 : 건축기획과(044-201-3760)
전문참고 : 국토교통부(www.molit.go.kr)

▣ 개정이유

「건축법」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 기준을 설정하고,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고층건축물 공사 감리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공작물 축조 신고시 구조안전을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물 내진 등급의 설정 (안 제60조 신설)

- (1) 「건축법」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내진등급기준에 대하여 규정
- (2)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건축물의 내진등급을 결정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내진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나. 고층건축물 감리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를 규정 (안 제61조 신설)

- (1) 「건축법 시행령」제91조의3제5항에서 감리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 등”을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
- (2) 고층건축물의 구조안전성 확보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아름다운 명언

- 지그 지글러 -

Men of genius are admired,
men of wealth are envied,
men of power are feared,
but only men of character are trusted.

천재성을 가진 자는 경탄의 대상이 되고,
부름 가진 자는 시기의 대상이 되고,
권력을 가진 자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만,
품성을 갖춘 자는 신뢰의 대상이 된다.



전력기술관리법령 유권해석(산업통상자원부) 사례

1 PQ평가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경력 인정여부

- 법인회사 본사 업무용빌딩으로 사용중이며 수전용량이 500(kVA)인데, 본인이 전기자격증으로 건물에 선임신고 시 선임경력 기간 동안 감리를 위한 PQ가점이 가능한지
- 현재 제조업체에 근무자는 전기선임시에도 감리를 위한 PQ점수가 전혀 없다고 들었는데 업무용빌딩도 마찬가지인지,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 및 상가건물 등은 50% PQ가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가점이 있는지

관련법령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민원요약

- PQ평가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경력 인정여부

- PQ고시 [부표 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1호(참여감리원 담당업무 경력산정방법) 라목에서 건축물시설(종류는 아래에 나열)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안전관리 경력은 경력년수를 40% 인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시설—업무용빌딩, 주거 및 상가건물의 안전관리 경력은 인정됨
: 공공건물, 주거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체육시설, 교육·연구시설, 기타 건축시설

*위 건축물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업(산업시설로 분류) 등의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10. 6. 16)

2 설계·감리용역 실적확인서류에 대하여

- PQ고시에서 설계용역의 실적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별지서식의 “설계용역수행사실확인서”를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협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 이를 G2B 전자출력물인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 PQ고시 제5조제1항에서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따른 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설계·감리업현황신고서와 발주자가 확인한 용역수행사실확인서(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를 협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별지서식”은 규정할 사항의 종류, 성질, 분량 등을 고려하여 법령에서 조문으로 정하기 곤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 정부가 전력기술관리법령의 운영 및 협회의 업체(실적)관리가 용이하도록 표준화(정형화)된 서식으로 모든 업체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전력기술관리법령의 절차에 따라 실적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10. 9. 28)

전기사업법 유권해석(산업통상자원부) 사례

공동주택 관리소장과 전기안전관리자 겸직 가능여부

- 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업무와 관련으로,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의 전기안전관리자 겸직에 대하여 최근 법제처 법령해석과 법원 판례가 달라 민원업무 처리에 혼선이 발생
- 이에 「주택법」에 따라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이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1278(2013. 9.30)

- 전기사업법 제73조 규정에서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를 두고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같은 법 제7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기사업법령에서 전기안전관리자가 관리소장 등의 겸직을 제한하는 명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전기안전관리자의 타 직무 겸직의 경우 각각의 성실한 직무 수행을 동시에 충족하기 어렵고 각 개별 법령에서 범위·조건 등을 정하여 일부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음을 볼 때, 겸직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을 것이며 업무를 중복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는 한 겸직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법제처에서도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관리소장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819(2013.10. 8)

- 관리사무소장은 「주택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직무에 전념하여야 하며, 전기기사 역시 공동주택내의 전기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필수인력이므로 겸직은 어려운 것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사안에 대하여 법제처에서도 우리부와 같은 법령해석 결과를 회신한 바 있으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